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담당자	중소기업과 사무관 양병권(02-2100-2992)	
	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태경(02-3145-7550)		여전감독총괄팀장 이상민(02-3145-7552)	

제 목 :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1 개정 배경

- 금융위원회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개정(16.4.25)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,
-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「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」 개정안을 7.6일(수) 의결

2 주요 내용

- ①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(안 제24조의5제3항)
- (현행)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
 - (개정)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

②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(안 제25조제4항)

- (현행)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, 내용 등을 홈페이지, 청구서, 우편서신,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
- (개정)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,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

③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(안 제25조의7)

-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*(여전법 시행령 개정)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** 등 마련
- *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 →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
- **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 초과 등

3 향후 일정

-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시행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총서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